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1차 교육위원회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육성지원협의회 및 지역협업위원회 통합〉

■ 김대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353호)

2024. 11.

교 육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대식 의원 등 18인
2. 발의연월일 : 2024. 8. 29.
3. 회부연월일 : 2024. 8. 3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부는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학 지원 관련 행·재정적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대폭 위임·이양하고,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지방대학을 지원하는 구조로 지방대학 육성 정책의 방향을 전환해 나가고 있음.

이러한 정책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지방대학, 지역의 산업계 등 지역의 정책참여자 간 소통과 협력이 긴밀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필수적이므로 관련 정책의 추진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존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와 지역협업위원회를 ‘지역고등교육 및 인재양성 협력위원회’로 통합하여 설치·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중심의 대학지원체계가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 삭제 및 제21조 등).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기존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와 지역협업위원회를 ‘지역고등교육 및 인재양성 협력위원회’로 통합하여 설치·운영하고 있음.

현행	개정안
제19조(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의 육성·발전에 관한 중요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대학·산업체 및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한다.	<삭 제>
제21조(대학과 지역의 협업) ① ·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각 지역의 협업체계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 소속으	제21조(대학과 지역의 협업)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각 지역의 협업체계 운영과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발전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

현행	개정안
로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 고등교육기관, 공공기관 및 기업의 장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이하 “지역협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④ <u>지역협업위원회의</u> 위원장(이하 “<u>지역협업위원회의 장</u>”이라 한다)은 해당 지역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에 고등교육기관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도 공동위원장이 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운영,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u>지역협업위원회의</u>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의 지정 등) ① 교육부장관은 <u>지역협업위원회의</u> 장의 신청(<u>지역협업위원회의</u> 장이 둘 이상일 경우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에 따라 지방대학의 학과	· 의결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 고등교육기관, 공공기관, 연구기관 및 기업의 장 등으로 구성된 <u>지역고등교육 및 인재양성 협력위원회</u>(이하 “<u>협력위원회</u>”라 한다)를 둔다. ④ <u>협력위원회</u>----- -<u>협력위원회</u>----- ----- ----- ----- ----- -----. ⑤ ----- ----- --<u>협력위원회</u>----- ----- -----. 제22조(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의 지정 등) ① -----<u>협력위원회</u>----- -----<u>협력위원회</u>----- ----- ----- -----

현행	개정안
개편 및 교육과정 개선 등 고 등교육혁신을 추진할 수 있는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이하 “특화지역”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u>지역협업위원회</u>의 장은 특 화지역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 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 된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계획 (이하 “특화지역계획”이라 한 다)을 수립하여 교육부장관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5. (생략) ③ <u>지역협업위원회</u>의 장(공동 위원장이 있는 경우 지방자치 단체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항과 제6항에서 같다)은 특화 지역의 지정을 신청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특화지역계획을 공고하고 주민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 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u>지역협업위원 회</u>의 장의 신청에 따라 특화지 역을 지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후 특화	----- ----- ----- -----. ② <u>협력위원회</u>----- ----- ----- ----- ----- -----. 1. ~ 5. (현행과 같음) ③ <u>협력위원회</u>----- ----- ----- ----- ----- ----- -----. ④ -----<u>협력위원회</u>----- ----- ----- -----

현행	개정안
지역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특화지역계획을 확정하고 특화지역을 지정한다. ⑤ (생략) ⑥ 교육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특화지역을 지정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할 <u>지역협업위원회</u>의 장에게 관계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를 송부받은 관할 <u>지역협업위원회</u>의 장은 해당 관계 서류를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 (생략) 제24조(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의 변경·지정해제 등) ① 교육부장관은 직접 또는 관할 <u>지역협업위원회</u>의 장의 신청에 따라 특화지역계획 및 특화지역의 지정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이 직접 특화지역계획 및 특화지역의 지정을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	----- ----- -----. ⑤ (현행과 같음) ⑥ ----- ----- ----- -----<u>협</u> <u>력위원회</u>----- -----. ----- <u>협력위원회</u>----- ----- -----. ⑦ (현행과 같음) 제24조(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의 변경·지정해제 등) ① ----- -----<u>협력위원</u> <u>회</u>----- -----. ----- ----- ----- -----

현행	개정안
우를 제외하고는 관할 <u>지역협업위원회</u> 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u>협력위원회</u>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접 또는 관할 <u>지역협업위원회</u> 의 장의 신청(<u>지역협업위원회</u> 의 장이 둘 이상일 경우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에 따라 특화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③ ----- ----- ----- <u>협력위원회</u> ----- ----- <u>협력위원회</u>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④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특화지역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u>지역협업위원회</u> 의 장과의 협의(관할 <u>지역협업위원회</u> 의 장과의 협의는 교육부장관이 직접 특화지역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와 특화지역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 ----- ----- ----- ----- <u>협력위원회</u> ----- ----- <u>협력위원회</u> ----- ----- -----.
⑤ 교육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특화지역계획 및 특화지역을 변경하거나 특화지	⑤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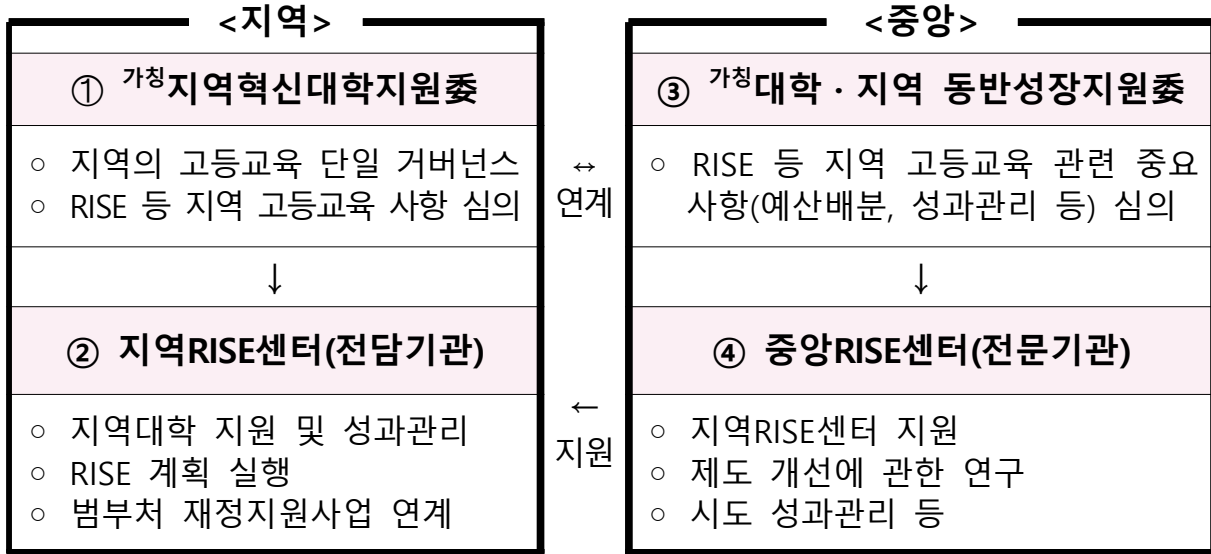
현행	개정안
역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할 <u>지역협업위원회</u> 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 <u>협력위원</u> <u>회</u> ----- ---.
⑥·⑦ (생략)	⑥·⑦ (현행과 같음)

교육부는 2025년부터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를 구축, 시행하려고 하고 있음. RISE는 지자체의 대학 지원 권한을 확대하고 규제를 완화하여 지자체 주도로 대학을 지원함으로써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추진하는 체계임.

개정안은 이러한 체계 변화에 따라 기존 지방대육성법 상에 규정된 협의회, 위원회를 통합함으로써 RISE 체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임.

다만, 교육부는 현재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구축을 추진함에 따라, 이에 다른 RISE 거버넌스 구축을 추진 중이며, 그에 따라 기존과는 다른 방식의 거버넌스 및 추진체계를 구축 중인바,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I RISE를 위한 거버넌스 및 추진체계(안) I



교육부는 지역협업위원회 등 지역과 대학의 협력을 위한 체계는 25년부터 RISE 체계가 도입됨에 따라 「고등교육법」에 규정할 필요¹⁾가 있으며, 「고등교육법」 개정안²⁾에서는 지역의 자율성 강화라는 RISE 취지를 고려해 지역 내 RISE 거버넌스의 위원 구성·운영 등은 지역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188

1) 지역협업위원회 조문 삭제 예정

2) 의안번호 제2203129호, 김민전 의원 대표발의